

# 工業所有權審判事例

國 內 事 件

## 拒 絕 查 定

<大法院 第1部 判決>(1981. 3. 5)

裁判長: 大法院判事 김 대 현

關與法官: // 주 재 황·라 길 조

1. 審判請求人(上告人): 시멘스 악팅게젤샤후트(獨逸聯邦共和國 8000  
뮤니히2 비텔스바헬 프라츠2)

2. 被審判請求人(被上告人): 特許廳長

3. 原 審 決: 特許廳 1980. 7. 31字, 1979年 抗告審判(絕) 第28號審決

4. 主 文: 上告를 棄却한다. 上告費用은 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.

### 5. 理 由

審判請求人訴訟代理人의 上告理  
由를 본다.

原審決理由에 의하면 本發明의  
要旨는 면과 면이 점용점으로 連結  
된 두개의 판판한 스트립(1,2)이  
있어 이 스트립의 하나로 두개의  
外部팅(4)과 다른 하나의 스트립으로  
외부팅(4)사이 에 位置한 中央팅  
(9)을 만들어 이 세계의 텅으로 두  
개의 크램핑홈(7)을 만든 電熱導體  
의 電氣의인 連結을 위한 크램핑要  
素로 되어 있으나 本發明의 構成에  
따른 作用效果와 어떠한 方法으로  
使用되는지 記述하려 함에도 不拘  
하고 明細書上에 具體的으로 記載  
되어 있지 아니하여 알수 없는 것  
으로 營業者가 容易하게 實施할수  
없는 程度이고 本願의 用途 또한  
電熱導體의 電氣의連結을 위한 것  
이라고만 되어있을뿐 어떠한 電熱  
導體를 어떻게 連結하는지에 대해  
說明이 전혀없고 本願에 대한 電氣

의인 特性이나 其他特徵에 관한 것  
도 具體的으로 記載된바 없어 本願  
은 進歩性的인 判斷上이나 營業者가  
實施可能할 程度로 그 要旨가 陳述  
되어 있는 것으로 認定되지 아니한  
다고 判斷하고 있는 바

이를 記錄에 對照하여 살펴보면  
原審決의 위와같은 判斷措處는 상  
당하다고 是認된다 할 것이고 거기  
에 所論과 같은 審理未盡이나 法律  
適用을 잘못된 違法이 있다고는 할  
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 背馳되는  
見解에선 論旨는 理由없음에 歸着  
된다 할것이다.

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기로 하고  
上告訴訟費用은 敗訴者인 審判請求  
人의 負擔으로 하여 關與法官의 意  
見이 一致되어 主文과 같이 判決한  
다.

### 一 參 考 一

#### 抗告審

1979年 抗告審判(絕) 第28號

抗告審判請求人: 시멘스 악팅 게  
젤샤후트

1970年特許出願第1512號 拒絶查  
定 不服抗告審判請求事件에 대하여  
다음과 같이 審決한다.

主文: 本件抗告審判請求는 成立할  
수 없다.

